

# 더! 많은 분들에게 꼭! 필요한 도움을

## - 7월,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-

### ○ 맞춤형 급여란?

-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,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등을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

### ○ 선정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.

- 기준 중위소득 반영에 따른 향상된 생활실태 반영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: 사망한 자녀·부모의 배우자인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
-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

### ○ 선정기준 및 급여내용

급여구분	선정기준 (4인가구 기준)	급여내용	부양의무관계	비고
생계급여	중위소득 28%수준 (118만원 이하)	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, 해산.장제	조사	
의료급여	중위소득 40%수준 (168만원 이하)	의료, 주거, 교육, 해산.장제	조사	
주거급여	중위소득 43%수준 (181만원 이하)	주거, 교육, 해산.장제	조사	
교육급여	중위소득 50%수준 (211만원 이하)	교육	미조사	

※ 중위소득이란: 전체국민을 가구 소득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함.( '15년 4인가구 중위소득 422만원)  
(1 ~ 100등으로 순위를 매길 경우 50번째 소득순위인 가구의 소득)

### ○ 신청 절차

- 기존수급자: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
- 신규신청자: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- 집중신청기한: 6월 1일 ~ 6월 12일까지(추후신청은 수시가능)

☎ 문의처: 관할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과  
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